

體力에 관한 管理史的 小考

—韓美日蘇를 中心으로—

金 鳳 梧

(體育教育科)

1. 序 言

體力에 관한 科學的인 研究 이전에 고대로 부터 長壽를 원하는 것이 人間의 本能이었으며 어떠한 方法과 手段을 利用해서라도 健康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人間 本연의 관심사였다. 히포크라테스 以後 많은 사상가들이나 教育에 관심있는 學者들이 體育 내지는 體力管理 (東俊郎 1943: 4~5)를 論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體育의 暗黑時代라 일컫는 중세기 以後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미베스, 라베라, 몬테뉴 등이 體力 運動에 對해서 言及을 했으며 코메니우스, 밀톤, 로크, 루소, 실러 등이 그들의 著書를 通해서 體育을 실감있게 論하였다. 르네상스와 宗教改革을 通한 人間解放은 精神과 身體의 區別을 明確하게 하려 하였고 쿠즈무츠, 베스, 얀, 스피스 등의 體操家들은 體操를 하는 立場에서 科學的인 根據를 가지고 體力의 이론을 展開하였다.

18, 9세기에 들어서서 호프만, 티솅, 쉬르베르 등의 醫學者들이 身體運動과 醫學과의 關係를 醫的인 方法으로 다루었으며, 스트랏츠와 같은 學者는 靑少年의 發育段階를, 마틴 같은 사람은 人體測定을 쉬미드는 人體生理構造와 體育運動을 檢討하여 스포츠의 科學 理論을 完成시켰다.

1928年 세인트 모리츠에서 國際的 共同관심사인 體力을 研究하기 위해 Federatio Internationale Medicina Sportive가 결성되어 1936年 베르린에서 스포츠 科學大會를 열었으며 필러, 카파비치, 카즌스, 큐리톤 등 學者들의 研究로 1964年 동경올림픽 당시 세계 各 國民間의 體力比較와 全世界人의 體力增進을 目的으로 國際 스포츠 科學 會議에서 國際身體適性檢査表標準化委員會(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Physical fitness test)가 發足되었고 계속연구 끝에 1971年 Performance test가 表準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體力에 관한 研究는 계속되었으나 各國마다 이를 向上시키기 爲한 背景은 많은 差異를 가지고 있어 體力管理의 歷史를 고찰함은 우리의 處地를 爲해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2. 韓國의 體力章制度

體育의 目的과 方法이 社會的 背景과 性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常識이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는 1882년에 外國風의 學校(廣惠院)가 始作되면서 1886년에 英語를 中心으로 洋學을 教授, 새 教育을 베풀었으며 宗教團體의 學校에서 體力이란 觀念없이 야구, 축구, 정구 등의 스포츠를 시키기 始作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 1968 : 411).

1895年 學部令이 制定되어 “나라의 維新은 教育에서부터”라는 大詔書를 내리고 教育의 實際는 德養, 體養, 知養에 있다하여 새 教育의 大綱領을 중심으로 關係 師範學校가 開리고 소학교령이 頒布되었다. 甲午更張을 中心으로 該 以前은 武藝가 體育的인 手段으로 國民들의 體力向上에 큰 功헌을 했고 後, 體操가 學校에 도입되어 近代체육 發達과 아울러 國民체력향상을 爲한 運動의 效시가 되었다(羅綯成 1970 : 11)고 볼 수 있다. 當時에는 前에는 形式的인 體操가 學校教科目으로 되었고 내용은 遊戱와 普通體操와 兵式體操를 加하되 主로 兵式體操를 加르셨으며 점차 學校體操로 바뀌며 스포츠, 遊戱를 加미시켰던 것이다.

韓日合邦 後 日人들은 우리의 教育을 통제하였으며 體操教育에 音樂을 연결, 正서교육을 시키었고 新체검사를 最初로 실시(1910. 5. 10. 漢城高等學校), 당시 체조지도에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한다.

1914年 6월에 마련한 朝鮮總督부의 “普通學校 體操教授要目”을 1927年 4월에 朝鮮教育令에 依해 개정, 오늘날과 같은 一般體操形式을 갖추어 的學的인 意義를 역설하게도 되었다.

1927年 10월에는 中央 Y.M.C.A 체육부에서 보편화한 運動을 장려하기 爲하여 철봉대회를 개최하였고 1931年 9월에 덴마크體操의 創始者인 닐스-북 일행이 來韓하여 우리의 基本體操 形成에 밑받침을 마련해 주었고 기계체조대회, 덴마크체조강습회 등을 개최하여 學校中心의 體操를 우리나라 民衆促進運動의 한 方法으로 확대 보급시키게 되었다.

日本은 그들의 目的達成을 爲해 軍事教育을 시키는 등 우리의 모든 教育制度를 그들과 같이 하였다. 그러나 解放을 맞아 各級 學校에서 體育을 필수교과목으로 채택, 國民체력향상을 기하기 爲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51년부터 실시하던 學校身體檢査(문교부령 152)는 1969년부터 1974년까지 4차례나 개정하였고 1959년에 學校體育施設基準을 마련하고 後 여러차례 改訂 體力向上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1962年 9月 17日 國民체육의 진흥을 爲해 國民체육진흥법(법률 1146호)을 발표하였다.

1967年 3月 學校保健法(법률 1928호)으로 보건관리에 必要한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學生들의 健康을 보호 증진시켜 教育의 能率化를 기하였다. 이는 학교신체검사 규정과 중복이 되나 학교장의 책임하에 學生들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예방을 爲해 必要한 指導를 하도록 체능검사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점차 체육의 공헌도를 國民 스스로가 느끼고 체육人口가 확대됨에 따라 國家의 관심을 더욱 깊어져서 1970年 3월에 國民체육심의위원회(대통령령 4694호)를 둘과 아울러 國民체육, 학교체육, 체육시설에 關한 기본계획, 체육기금의 확보 및 운영, 運動용구의 수급계획 등 체육진흥에 必要한 사항들 심의토록 하였다. 앞

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에 걸쳐 개정 보완하여 체육진흥으로 국민체력을 증진하고 健全한 精神을 함양,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 스스로가 自發적으로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의 身體活動을 하도록 장려하고 保護育成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토록 하였다. 이 시행령(72.4. 6140호)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하여 문혀가는 民俗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직장체육진흥을 爲해 學校와 職場에 “體育振興管理委員會”를 두며 職場에서는 운동경기부터의 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체육단체의 보조와 체육진흥기금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補助 등을 규정하였다.

3차나 개정된 學校身體檢査規定도 체력검사의 內容이 I.C.S.P.F.T의 규정과 우리 실정에 맞게 실시하기 爲함이었으며 과거의 체능검사 4종목을 9살부터 18살에 이르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72年 3月부터 검사기준표와 級數判定表를 작성 8종목을 학교신체검사규정에 의한 體力章과 高校入試 및 大學入試內申을 爲한 制度로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급수관정에서 특급인 학생을 體力章徽章을 주고 獎學金 등 특전을 주어 학교 체육의 正常化 내지는 국민체력향상을 기하는데 目的을 두게 되었다.

體能檢査, 體力檢査의 올바른 評價를 爲해 入試成績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우여곡절과 試行錯誤를 범하면서 체력장제도를 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美國의 身體適性 테스트

各 週마다의 教育의 特徵이 있는 미국은 教育法上에 거의가 체육이 필수로 되어 있는 것이 근래의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스포오츠의 진흥과 국민의 체력향상, 생산력의 향상을 爲해 체력에 대한 問題는 여러 學者, 政治人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John E. Nixon 1968 171~182).

신체적성에 관한 역사적 발달을 보면 1885년에 스웨덴 醫學體育講師 윌리암 안델손에 의해 신체적성을 발달시켜 보려는 협의회를 가져 오늘날의 A.A.H.P.E.R가 탄생되었으며 이 協議會를 갖은 以後 美國人은 理想的인 人間, 내지는 “典型的인 人間”을 만들기 爲해 신체 측정의 기준을 만들고 많은 테스트의 方法을 考案시켰다.

1902年 서전트가 근력, 속도, 지구력을 爲한 一般的인 測定法을 發表해서 신체적성을 爲한 運動能力의 기초를 잡게 되어 이때부터 美國 體育은 스포오츠 맨스, 달리기, 던지기, 균형잡기, 매달리기, 오르기, 잡기 등등의 인간본연의 기본기술로 구성되는 운동을 강조하는 “自然的 計劃”의 方向으로 되었으나 세계 第二次大戰後 또 체력을 爲한 교육계획에 결핍 현상이 일어나 1950년대 후기에는 各級學校의 체육교육이 무시되고 체육관, 體育場의 시설이 殆無하다는 보고(Eisenhower's fitness conforence, 1956, June)로 學校체육에서 신체작성은 “잃어

버려진 目標”로 되어 버렸다.

1954년에 크라우스 研究陣이 연구한 “最少 適性水準(AAPHER 1954 Vol. 25)”이 아이젠하워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리의 관심을 불러 이르켰으며 1956年 6月 미해군 사관학교에서 “Conference on fitness of American Youth”를 갖으면서 靑少年들의 저하되어가는 체력에 관심을 쏟아 체육, 스포츠, 의학, 교육, 정부관리들이 망라되어 美國人을 보다 幸福하고 건강하게 또 바람직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는 全國民의 體力을 向上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토의된 10개 항목을 要約하면(C.A. Bucher 1958 : 195~197)

- 1) 體力에 관한 많은 研究가 必要
- 2) 美國人에 알맞은 適性의 創造와 研究를 爲한 補助, 補助機關 및 委員의 必要性을 強調
- 3) 靑少年, 少女들을 爲한 보다 많은 計劃과 課제가 必要
- 4) 學校에서 健康과 體育에 관한 시험을 더욱 많이 補強
- 5) 國民들의 체력위에 國家의 힘이 維持된다는 것을 確認시킨다.
- 6) 指導者들은 그들 자신과 國家를 爲해서 체력을 向上시킬 의무가 있다.
- 7) 國家는 地域 指導者들의 보다 나은 지도력을, 社會에 대한 奉仕를 더욱 要望한다.
- 8) 모든 家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과 建物空間을 어린이들의 놀이를 爲해서 提供, 學校나 公園 등의 모든 施設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것.
- 9) 모든 大學이나 매스컴을 체력향상을 시도하는데 공헌토록 하고 이들을 爲한 최대限의 財政的인 기금 지원
- 10) 부모들은 靑少年들의 체력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重要性을 강조하며 스포츠맨십과 誠實性을 기르도록 한다.

以上과 같은 협의에 이어 同年 7月 大統領에 依해 靑年適性에 관한 大統領 직속심의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체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大統領은 당초의 目的인 신체적성의 증진에 自己의 意見을 表現하지도 않고 전체국민에게 國家의 利益과 市民의 복지를 爲해 신체적성의 증진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후 「케네디」의 “軟弱한 美國人”이라는 論說에 힘입어 신체적성의 문제는 전에 없이 강력한 支援를 받게 되었으며 정기적인 洲 知事會議에서, 또 내각과 정부관리들에게 이 計劃을 增進하고 支援하기를 강화하였다.

「버드」를 특별고문으로 임명하여 1961년에 학교중심의 계획인 “靑年 身體適性”과 곧이어 1962년에 地域社會의 계획을 爲한 “레크리에이션에의 신체적성 요소” 등을 발간 배포해서 신체적성을 爲한 운동과 학교교육과정에서 充分히 活用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젊은이나 노인이 다 같이 美國人으로서 신체적성을 증진키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계속해서 신체적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심의회”로 改稱(1963. 1. 8)하면서 체육의 역점을 身體適性主義(The doctrine of physical fitness)에 두고 체력증진에 진력하였다.

이에 국가기관의 연구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計劃과 지식이 狀態改善을 爲해 提供되었으며 前 美國人이 이의 必要性을 실감하였다.

以後 歷代 大統領은 이 사업을 이어받아 少年, 少女, 學生, 成人들을 爲한 小冊字를 發刊하고 身體適性の 發達을 爲한 “Demonstration Center School”를 通해 身體의 發達과 身體適性(體力)의 增進에 努力하고 있다.

4. 日本의 스포츠 테스트

富國強兵策을 세운 근대의 日本은 약 100년간을 個人보다는 國家를 第一로 하는 心身이 강건한 국민을 育成하는데 급급했다. 明治 中期에 공포된 教育에 관한 勅語로 1940年代까지는 모든 教育은 儒敎의 精神을 주축으로한 人間像이 規定되었다. 따라서 제도상의 체육목표는 身體의 형태적 발달과 기능적 발달을 피하고 쾌활하고 인내성이 있는 個人的 性格을 發達시키고 規律, 協동의 습관을 형성시키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41년의 전쟁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 育成하였던 것이다(東龍太郎外 1962).

따라서 체육의 교재 내지 학습목표도 변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스포츠 테스트를 작성하기 까지도 시행착오적으로 各種의 테스트를 적용했던 것으로 發達經路의 背景을 알 수 있다(松島茂善 1972 : 1~26).

第一次大戰 後의 軍備축소로 學校敎練이 강화대교 교수요목에 有缺, 스포츠 교재가 많이 들어와 各種 스포츠가 盛行되었다.

1925年 日本體育聯盟은 “체육의 날”을 정하고 走, 跳, 投, 懸垂의 「競技檢査」를 실시하여 스포츠의 합리적인 실시와 청소년의 체력향상을 피하고 아울러 전반적인 스포츠 보급에 노력했던 것이다. 스포츠의 발전으로 전국적으로 각 종목의 경기단체가 설립되고 올림픽 출전을 爲해 體力과 運動技能을 측정하게 되자 科學的인 研究가 始作되어 1936年 敎授要目이 재개정되었고 이어 1938年 3月에 「體力章檢定」이 제정되어 체육은 국방경기적인 방향으로 急轉하여 국민전체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와 발전을 爲해 국민체육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므로서 文部省에서 관장하던 체육행정은 학교관계만 제외하고 모든 社會體育관계는 후생성으로 이관시켰다(日本體育學會 1968 : 385~412). 厚生省에서는

- 1) 體力向上의 企圖
- 2) 體力調査
- 3) 體力向上을 爲한 施設關係
- 4) 體育運動에 관한 事項

5) 妊産婦, 乳幼兒 및 兒童의 衛生事項

을 취급해서 소수의 선수가 경기기술이나 기록을 경쟁하는 것을 피하고 전국민이 신체를 단련토록 하므로써 戰時體制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전시체제의 一環으로 體力章檢定이 행해졌으며 신체활동 내지는 國民體位의 향상으로 인적자원의 충실과 國防力을 강화하고 산업력을 확충시켜 국가의 목적달성에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또한 후생성은 체력장 검정을 배경으로 1940년에 국민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國民體力法을 만들어 一般의인 신체검사와는 달리 신체계측과 질병검진외에 精神機能檢査, 운동기능을 측정하는 「體力테스트」를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후 마칩내 달리기, 뛰기, 던지기, 턱거리, 엎드려 팔굽혀펴기, 각종운동중의 자세, 체조 등의 運動能力檢査와 身體檢査, 人物考査로 중학교 入學試驗을 대신하는 전시적인 색체를 띠었으나 終戰後는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第二次大戰이 종료되면서 美國教育使節團의 示唆를 받아 문부성에 學校體育研究委員會를 設立하고 새로운 학교체육지도 요강을 편정하여 체조, 기본적 신체형성운동, 개인적인 종목, 단체적종목등 본래의 면목을 발휘하여 개인의 發達過程을 중시 존중하는 學習理論을 전개하였다.

1949년부터 學生들의 「運動能力實態調查」를 하여 운동능력의 推移를 確認하고 각종목의 연령, 성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一定基準에 合格하면 뺏지를 수여하였다. 아울러 日本體育協會는 各種 스포오츠의 普及과 이의 健全한 發達을 도모키 爲하여 體操, 陸上, 水泳, 球技 等の 各種 基礎的인 機能을 테스트하는 획기적인 「Sports badge test」를 제정(1949)하여 各種 스포오츠의 發展과 社會體育振興에 큰 역할을 擔受하였다.

1950年 日本體育學會가 設立되면서 體育의 科學的인 研究가 始作되었고, 큐리튼의 運動適性を 考參한 中, 高, 大學生의 「運動適性檢査」가 作成되었다.

또한 스포오츠의 効果는 身體의 持久性を 기르며 이 持久性은 日常生活, 職業活動 등에서 效果的인 作業能力을 갖게 된다고 보아 體力診斷 테스트에 關係 研究하기 始作했다.

大規模의 競技場, 體育館이 建造되고 이 시설을 國民 누구나가 活用하는 한 方法으로 「國立競技場 스포오츠 테스트」를 제정(1959)하고 스포오츠 發展과 體力向上을 爲해 各種 스포오츠의 基礎가 되는 運動能力을 測定하였다.

1961年 6月에는 國民의 心身의 健全한 發達과 밝고 豊부한 國民生活의 型成을 爲해 「스포츠 振興法」을 制定하고 문부성 보건체육심의회의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 테스트」를 國家와 地方公公團體에서 施行토록 活으로 整하였으며 中學校以上 學生들과 勤勞靑少年에게 基礎的인 運動要因을 다루는 體力診斷과 運動能力을 測定하는 運動能力 테스트를 科하였다 (1963).

이어 「小學校 스포오츠 테스트」 30~60세의 壯年을 爲한 「壯年體力 테스트」가 실시(1965)

되어 10세부터 60세까지의 體力, 運動能力의 推移가 把握되고 있다. 添言할 것은 위와 같은 테스트가 進行되면서 1964年 12월에 「國民健康과 體力增強對策」을 閣議에서 決定하고 國民이 日常生活을 通해 健康하고, 體力을 加구도록 「國民體力 加구기」國民會議가 官, 民 合同으로 設置되고 그 事業協議會가 決成되어 積極的인 國民運動으로 發展하였다.

이와같이 時代의 變遷에 따라 體力을 보는 viewpoint이 다를 뿐 아니라 어느 時代건 健康한 國民으로서 富強한 國家의 힘을 기르기 爲해서 個人이나 國家社會가 努力하고 있어 日本의 體力은 世界水準級으로 拔돋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蘇의 G.T.O章

蘇聯의 體育活動은 엄격한 國家統制로서 勤勞者의 健康을 增強하고 社會主義 國家建設을 爲한 作業能力向上을 目的으로 50餘年동안 變化過程을 거쳐 完成시킨 G.T.O章 制度를 使用하고 있다.

G.T.O란 GATOBK, TRUDU, OBOPONIE USSR의 약자로 “蘇聯의 勞動과 國防에의 準備”라는 뜻이다.

體育, 스포츠는 共產主義教育의 重要한 手段으로 大衆을 共產主義로 이끌어 넣고 團體에 參加시키는데 效果的인 方法으로 그 發展過程의 區分을 時期로 보면 5期로 나눌 수 있다.

1) 第一期(1917~1920) 國內戰爭의 體育發展 基礎確立時代로 이때는 이미 體育에 國家的인 意義를 加하여 軍事豫備訓練으로 장려하였고 1919年 青年共產同盟大會에서, 生産活動에 대해서 青年의 準備가 必要하고 社會主義社會의 武裝防衛를 決議하였다.

2) 第二期(1921~1929) 國民經濟復興再建期로서 體育 System 發展時代, 이때는 體育指導와 軍事機關을 분리시키고, 勤勞者의 體育指導의 研究와 特別教育機關, 勞動組合組織의 活動을 統一하고, 따라서 公共機關의 體育에 關한 全般的 活動을 基礎的으로 研究해서 勤勞者의 體育實踐形成과 內容을 法令이나 政令으로 布告, 모범적 設備와 器具를 製作, 體育 및 體育理解를 爲한 宣傳을 함으로서 體育運動에 성과를 보였다.

3) 第三期(1930~1940) 社會主義建設期로 大衆體育運動의 發展時代

오랜 農業國에서 工業部門과 大集團農場으로 탈바꿈하는 第一次 5個年計劃을 完수하고 強大國으로 移行되어 社會主義國家의 建設을 강화함으로 體育運動에 대해서도 강력한 國家指導로 1931年 全蘇體育評議會에서 大衆의 身體訓練을 目的으로 한 G.T.O統合體力章檢定을 展開토록 公布했으며 1936년에는 體育評議會가 전 소련 체육 스포츠오르위원회로 改組되어 各각의 부속機關으로 設立되어 國家指導를 強化하였다.

4) 第四期(1941~1945) 祖國防衛를 爲한 體育時代로서 體育團體의 活動은 戰時體制로 들

어가 有能한 體育指導者들은 전장아니면 勞動에 獻身的으로 종사, 체육과 군사훈련은 完全히 結合되고 말았다.

5) 第五期(1946~1956) 戰後의 體育, 스포츠發展時代 前後 體育政策은 황폐한 運動施設의 부흥, 스포츠단체의 組織化 體育指導者의 養成 G.T.O중합체력검정의 改訂 등을 가져왔다. 特히 G.T.O章의 普及은 性, 年齡別로 B.G.T.O, G.T.O 1級, 2級の 3段階로 나누고 (1959. 1), 전시적인 內容으로부터 基礎體力의 육성과 競技中心의인 方向으로 바꾸어졌으며 테스트種目은 知識과 走, 跳, 水泳, 體操를 필수로 하고 그 外 선택은 팀스포츠 등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것들은 學校教育을 基礎로 한 것이다.

1961~64년의 스포츠級別을 發表하고 이들을 大衆化策(小川行夫, 1971; 129~135)으로 <<1+2>>運動(1名의 스포츠맨은 2名의 친구를 活動에 권유하는 運動)을 해서 大衆的인 스포츠활동을 시켜 學校體育은 記錄主義가 批判을 받고 實生活과 연결시켜 스포츠 人口의 저변 擴大策을 이루고 있다.

6. 結 言

그 國家의 繁榮은 그 國家의 民族力에 달려 있으며 民族力의 育成을 爲해서는 知性和 더불어 강한 體力을 培養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民들의 體力이 왕성하고 적극적인 健康을 지녔을 때 生産性이 높아져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國防力이 된다는 觀點에서 國民들의 體力向上은 重大한 것이다.

이에 본 小考는 各國의 體力章을 中心으로 體力管理의 歷史를 考察해 보았다.

그 結果 國民體力向上과 스포츠 人口의 底邊을 擴大하는데 體力章이 크게 貢獻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現 體力章制度를 철저히 시행하고, 一般人에게도 體力章制를 擴大할 것을 提言한다.

參 考 文 獻

官報 號外, 1914年 6月 10日字.

官報 號外, 1927年 4月 10日字.

國史編纂委員會(1968), 高宗時代史, 大韓民國 文敎部.

羅絢成(1970). 韓國學校體育制度史 서울:圖書出版敎育院.

계명사(1976). 文敎行政法典學事編.

東俊郎(1943). 스포츠體力管理 東京:杏林書院.

石川俊夫外 10人(1961). 體育學概論 東京:新思潮社.

東龍太郎外 6人(1962). 保健體育學大系卷 8. 東京：中山書店.

文部省(1964), 日本スポーツの現状 東京：教育圖書.

日本體育學會編(1968). 保健體育學講座 東京：體育の科學社.

小川行夫(1971), 學校體育論 東京：逍遙書院.

松島茂善(1972). スポーツテスト 東京：第一法規.

Bucher, C.A. (1958). *Administration of School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St. Louis Mosby Co.

Nixon, John E. (1968). *An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W. B. Saunders Co.

Craus, H. & R. Hirschland. (1954). Minimum Muscular Fitness Test in School Children
Research Quaterly Vol. 25.

Statistics Reported at President Eisenhower's Fitness Conference, June, 1956.

A Historical Study of the Management of Physical Fitness

Bong-oh Kim

Abstract

The prosperity of a country depends on the power of the combination of the people who compose the nation. In order to improve such a power, we should cultivate the physical fitness as well as intelligence.

When the people are in excellent physical condition,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ill be improved. It will become a motivating factor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 the power of national defense.

Each nation has devised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fitness of its people and has been putting that plan into practice.

This paper is an historical study of the physical fitness administration concerning Che-Ryuk-Jang (Record of Physical Fitness), a remarkable one among the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physical fitness.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Che-Ryok-Jang has contributed much to the improvement of physical fitness an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sports fans. It is my suggestion that we should thoroughly carry this system into effect and expand it to include the general public.